

영국사례 1

어린이와 관련된 기사는 충분한 근거에 바탕하여 조심스럽게
쓰여져야 한다

- 불만제기인 : 신원 미공개
- 적용된 조항 : 제1조(정확성), 제6조(어린이)
- 언론사 : 『News of the World』 (스코틀랜드 판)

청구내용

Aberdeen의 한 남성은 2008년 8월 10일 ‘칼을 든 일곱 살짜리 아이의 테러’ 라는 제하의 『News of the World』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자신의 아들 사진을 게재하여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 제6조(어린이)를 위반하였다고 언론

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 대상 기사는 불만제기인의 7살짜리 아들이 칼, 음주, 흡연 등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삽으로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등 Aberdeen의 지역주민들을 ‘테러’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 아이가 이미 여러 차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불만제기인은 기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부정확한 사실이며,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지만 그 사진으로 인해 아들의 신원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불만제기인은 자신의 아들이 한 학교를 지속적으

로 다녔음을 증명하는 학교 학사위원회의 자료, 아들의 의학적 소견서, 불만제기인을 지지하는 100여 명의 주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는 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면서, 신문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아이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아이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증거로 보도가 된 아이 행위에 대해 이웃이 쓴 일기장(이 일기장의 신뢰성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의문을 제기한다)과 그아의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관한

Aberdeen 시의회와 스코틀랜드 하원의 편지, 이웃, 기자 그리고 통신사 사진기자의 진술서, 지역 의회 의원의 진술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 경찰당국 또한 이 사건의 아이가 2008년 여름 동안 세 가지의 반사회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 이외 복수의 소식통들도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신문사는 그기사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불만제기인의 가족이 자신의 아이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지면

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는 보도 내용에 대한 명백한 근거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 있어 신문사의 가장 중요한 주장인 아이의 폭력 혐의와 여러

학교에서 퇴학조치를 당하고 여러 학교를 전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통한 입증 이 없다. 이 부분은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실천강령(제1조 정확성) 규정에 위배된다.

PCC는 기사의 내용이 충분한 정보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과 아이의 신분 공개를 피하기 위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이의 행동과 관련하여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실천강령 제6조(어린이) 또한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

영국사례 2

기사를 통해 공개된 이메일이 사건 관련 당사자가 제공한 것이고, 지역 사회에 지명도가 있는 인물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 불만제기인 : Mark Thorburn
- 적용된 조항 : 제3조(사생활)
- 언론사 : 『Sunday Sun』

청구내용

Northumberland에 거주하는 Mark Thorburn은 2009년 10월 4일 『Sunday Sun』에 게재된 ‘섹스 이메일 보낸 라디오 DJ 정직(停職)’ 제하의 기사가 자신

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여 실천강령 제2조(사생활)를 위반하였다고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인 Mark Thorburn이 노래를 신청하기 위해 연락한 여성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직무를 정지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제기인이 여성 청취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기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Mark Thorburn은 신문이 자신의 사생활에 관련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이는 공공 이익의 실현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이메일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청취자들에게 발송된 것이 아니라 특정 청취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 간의 의사 연락일 뿐이며, 그러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Mark Thorburn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신문사는 불만제기인은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지역 사회의 유명인사이고, 공개된 이메일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는 정당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Mark Thorburn은 회사 이메일 계정

을 통해 문제가 된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스스로를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묘사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아내와 아름다운 자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신문사는 해당 기사의 보도 이후, 또 다른 여성이 자신에게도 Mark Thorburn이 보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신문사에 제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

불만제기내용을 기각한다.

평결

이 사건과 관련하여, PCC는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기사가 어떤 실천강령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첫째, 보도의 근거가 된 이메일은 이메일을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제공한 것이다. 즉 공개된 이메일은 해킹된 것이 아니

며, 이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된 것도 아니다.

둘째, 이메일은 불만제기인이 방송 도중 회사 계정을 통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송한 내용이다.

셋째, 이메일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과 상호 작용을 수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유명 인사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과 그 곳에서의 행동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명 인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불만제기인이 음란한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것은 불만제기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필연적인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된다. 불만제기인은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쉽게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실제로 현재 일어난 바와 같이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만제기는 기각한다.

호주사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기사는 정정되어야 한다

• 평결번호 : 1442

호주신문평의회(APC)는 2009년 7월 20일 지역 일간신문 『The Daily Telegraph』가 10년 전 이미 정정된 자신의 축구 경력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전 미식축구 선수 Greg Smith의 의견을 인용했다.

불만 대상 기사는 뉴질랜드 출신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 Karmichael Hunt가 호주 럭비리그로 이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타 리그로 이적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1999년 호주의 프로 미식축구팀 ‘뉴캐슬 나이트’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 Smith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The Daily Telegraph』의 자매지인 『The Sunday Telegraph』는 1999년 5월 미국 미식축구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미국 스포츠 기자들을 통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Smith의 축구 경력을 이미 다룬 바 있으며, 당시 『The Sunday Telegraph』는 첫 보도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Smith가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테스트 차원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몇 차례 연습경기를 가졌으며, 정규시즌을 위한 정식계약을 한 적은 없다고 후속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The Daily Telegraph』의 문제가 된 보도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누구도 Smith라는 선수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ith는 이런 주장은 1999년 이미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2009년에 또 다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더욱이 신문사는 이번 기사에 대한 정정조치 거절하였다며 APC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Smith는 신문 기사가 자신에 대한 지칭 방법이나 묘사가 비하와 모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문은 기사의 내용은 1999년 Smith와 신문사 기자 사이의 대화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PC는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ith의 주장에 관한 사항을 지면에는 실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반영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Smith는 지면을 통한 정정을 끝까지 고집했다.

APC는 1999년 『The Daily Telegraph』의 자매지 『The Sunday Telegraph』가 보도한 후속 보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신문사는 올바른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자료도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사는 충실히 정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PC는 신문이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Smith에 관한 부정확한 신상 관련 내용들을 보도한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뉴질랜드 사례

논평이 전문가에 의해 편견 없이 쓰였다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은 정당하다

• 사건번호 : 2100, COLIN PANNEL AGAINST NEW ZEALAND HERALD

신문평의회(PC)는 Colin Pannell이 『nzherald.co.nz』의 ‘뉴질랜드 패션 위크’ 관련 보도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기각한다.

기사내용

『nzherald.co.nz』는 2009년 9월 22일 유명 패션 브랜드 ‘Basques’가 주최한 패션쇼와 관련해 ‘전문가의 안목, Janetta Mackay’라는 제하의 논평을 실었다. Janetta Mackay가 쓴 이 논평은 패션쇼에서 선보인 의상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내용이며, 이날 의상들은 페루 출신으로 현재 웰링턴에 거주하는 유명 디자이너 Viviana Pannell이 디자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만내용

자신이 디자이너 Viviana Pannell의 남편이며 패션 브랜드 ‘Basques’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Colin Pannell은 논평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왕가가 유럽의 유한족(有閑族)을 만나다”고 경멸적으로 표현하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Colin Pannell은 논평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New Zealand Herald』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주장했다. 또 Janetta Mackay의 논평에 담긴 ‘Basques’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종주의적 내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다.

신문사 측의 답변

『nzherald.co.nz』는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7년간 ‘뉴질랜드 패션 위크’ 취재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패션 저널리스트 Janetta Mackay의 사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패션 비평가의 입장에서 쓴 것이며, 개인의 의견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고 덧붙였다.

『nzherald.co.nz』측을 대변한 Jeremy Rees는 논평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왕가가 유럽의 유한족(有閑族)을 만나다”라는 문장이 비하와 경멸의 뜻을 내포하며, 그 표현의 지칭 범위가 패션 브랜드 ‘Basques’의 디자이너 Viviana Pannell 개인에게까지 미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논평이 외교관을 언급한 이유는 회색톤의 관료 스타일과의 대비를

통해 패션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Auckland의 패션을 부랑자 패션이라고 묘사하고, Janetta Mackays는 서쪽 시골에서 벗어나야 하며, 『nzherald.co.nz』에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Mangere(Auckland의 한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Colin Pannell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Viviana Pannell이 Janetta Mackay와 주고 받은 이메일 관련 발언과 ‘뉴질랜드 패션 위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Colin Pannell의 주장도 부인했다. 덧붙여 『Runway Reporter Website』는 『nzherald.co.nz』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논 의

PC는 불만제기인에게 온라인상에서 해당 논평의 삭제, 지면을 통한 사과, 금전적 보상 및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없음을 밝힌다.

평론은 원래 그 성질상 논평의 대상이 되는 예술적 창조물이나 결과물을 창작한 사람들에게 반감 내지 불만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일

반적인 사실이다. 또 논평이 전문가에 의해 편견 없이 쓰였다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하다. 특히 ‘뉴질랜드 패션 위크’와 같이 대중적인 행사에 창작물을 출품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창작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그에 대한 비판이나 논평도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Colin Pannell은 ‘Basques’의 의상을 부정확하게 묘사한 것(예를 들어, 표범 문양과 스팅글을 다룬 동물과 프랑스식 비딩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nzherald.co.nz』도 실수라고 인정했다. 『nzherald.co.nz』는 착오와 관련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음을 밝혔지만, Colin Pannell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착오가 중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PC는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점을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으로 설정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PC는 해당 논평이 Viviana Pannell을 비하하고 그녀의 사적인 거주 위치를 공개했다는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Mangere 출신 관련 발언과 Auckland 지방 패션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논평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Colin Pannell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논평에 대한 그의 반박은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논평이 과도하게 부정적이라는 감정적 해석을 PC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PC는 편향되지 않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어떤 위협이나 압력 없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출판의 자유를 옹호한다.

PC는 Viviana Pannell이 Janetta Mackay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통한 대화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심리와는 무관하고, Janetta Mackay의 부정적 논평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PC는 표절과 관련한 Colin Pannell의 주장에 대해서는 『Runway Report』의 웹사이트가 현재 폐쇄된 관계로 그가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리는 당분간 보류한다.

따라서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